

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지정기준(제6조제1항 관련)

1. 검사기관(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을 검사하는 기관)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품질관리와 관련이 있는 법인·기관·단체 또는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검사기관으로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.

가. 검사에 필요한 영업소를 갖출 것(제조업소는 그 업소를 영업소로 본다)

나. 별표 1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준의 시험 항목 및 별표 2의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기준의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를 측정·검사할 수 있는 기기를 기준장비(표준이 되는 교정용 장비를 말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와 검사용 장비를 갖출 것. 다만, 검사용 장비를 기준장비와 같은 수준으로 교정·관리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장비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최소한 2대 이상의 검사용 장비를 기준장비 수준으로 교정·관리하여야 한다.

다. 검사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책임자를 둘 것

- 1) 방사선과 전문의, 수의사 또는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물리학·전기학·전자학·기계공학·방사선학·의공학·원자력공학이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
- 2) 전문대학의 1)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실무 분야에 종사한 사람
- 3)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방사선사

라. 검사기관은 1년 이상 실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다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상용 종사자 2명 이상을 1개팀으로 하여 2개팀 이상의 검사인력을 확보할 것

마. 검사기관은 이 규칙 제2조제1호 각목의 해당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제조, 수입 또는 수리와 이해관계가 없을 것

바.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을 것

2. 측정기관(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기관)은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(방사선 분야)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「원자력안전법」 제78조에 따라 판독업무의 등록을 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.

가. 측정에 필요한 영업소를 갖출 것

나. 개인의 피폭선량 측정기 및 판독장치를 구비하여 측정 결과를 종합·분석 및 처리할 수 있는 기기를 구비할 것

다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책임자를 둘 것

- 1) 방사선과 전문의, 수의사 또는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물리학·전기학·전자학·기계공학·방사선학·의공학·원자력공학이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
- 2) 전문대학의 1)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실무 분야에 종사한 사람
- 3)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방사선사

라. 측정기관은 2명 이상의 측정인력을 상용 종사자로 확보할 것

마.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을 것

3.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리책임자는 1명으로 할 수 있다.